

# 입 법 정 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 1**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5
  - 3.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8
  - 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개정).....9
  - 5.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10
  -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11
  -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3
  -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13
-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 14**
  - 1.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15
  - 2.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16
  - 3.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17
-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 18**
  - 1. 자원순환 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관련 (경남 의령)···19
  - 2. 파크골프장 전용사용료 납부 관련 (경남 밀양).....22
  - 3.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지원 관련 (전남 영광).....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전부개정 '21. 11. 30. 시행 '22. 12. 1.]

소관부서 :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2

I

#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 ■ 개정이유

-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라. 연면적·높이·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제4항).
- 카.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제6호).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제정 '21. 11. 30. 시행 '22. 12. 1.]

소관부서 :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 ■ 제정이유

-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이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소방청장은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실태 조사와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나.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및 제16조).

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지사로부터 하역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및 제19조).

라.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마.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3조).

바.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제24조제1항).

사.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2항).

아.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제29조).

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시험 제도를 도입함(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차.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도록 함(제35조).

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들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제37조제4항).

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도록 함(제41조).

파. 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43조).

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1. 11. 30. 시행 '22. 12. 1.]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도시 중심의 압축성장과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농어촌은 20~30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 부족 및 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농어촌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다만, 평가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 환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전년도 시행계획 점검결과에 따른 제반조치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예산 반영 등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개선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임.
- 이에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협의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제도 개선 사항과 예산 조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기능에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담보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 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21. 12. 7. 시행 '22. 12. 18.]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관리 시책의 수립에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실제 기반시설 관리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1년 단위 실행계획 수립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이행점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매년 관리주체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기반시설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신설하고, 정부지원의 원칙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실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 5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 '21. 12. 21. 시행 '22. 12. 22.]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64

### ■ 개정이유

- 현행법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연금(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는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정보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 또한,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 및 그 지사가 각각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노후준비 4대영역(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는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면서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나. 국가노후준비위원회에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고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2 신설).
- 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제10조).
- 마. 연금보험,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그리고 이러한 교류활동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면서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장기등기증자뿐만 아니라 장기등기증희망자도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제6조제2항제3호).
- 나.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함(제6조제2항제5호).
- 다.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며,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신설 등).
- 라.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의 실시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제32조제3항).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6 [일부개정 '21. 12. 21. 시행 '22. 12. 22.]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1

## ■ 개정이유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함.

##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 12. 27. 시행 `22. 12. 27.]

소관부서 : 중소기업부(판로정책과), 044-204-7545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며, 현행법상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공동 실시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하청”을 “하도급”으로 순화함.

## 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2. 12. 27. 시행 `22. 12. 27.]

소관부서 : 산업통상자원부(석탄산업과), 044-203-5281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II

##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의결일 '22. 12. 22.]

### ■ 제정이유

- 의안번호 제384호 제정안과 제385호 개정안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개정안은 ‘옥외행사’)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법적 보완조치에 해당함.
- 제정안과 개정안 모두 그 목적과 취지가 동일하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독자적인 관련 법규를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행 옥외행사 조례를 개정하기 보다는 제정안과 개정안을 토대로 통합·조정하여 신규 조례로 제정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수정함 (안 제1조)
- 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정의를 수정함 (안 제2조제1호)
- 다. 시민의 의무 추가 신설 (안 제4조제2항)
- 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다중운집행사 추가 신설 (안 제5조제1항제3호)
- 마.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 구체화 및 통합 조정 (안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9호)
- 바. 안전관리계획 사전 심의 주체 변경 (안 제5조제3항)

사. 안전관리계획 관련 시장과 자치구청장 간의 협조체계 규정 (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2

##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의결일 '22. 11. 22.]

### ■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다.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5조)
- 라. 아동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7조)
- 마.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바.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 사. 아동급식 지원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 아.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지도점검 등 관리사항 규정 (안 제11조)
- 자. 아동급식 지원 업무에 관한 비밀 준수 의무 사항 규정 (안 제12조)

3

###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의결일 '22. 11. 25.]



#### 제정이유

충청북도 문화예술분야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로 충청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2조)
- 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라.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마. 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안 제7조)

## Ⅲ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기 개정된 조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해당 조례 시행 전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의령군 계획 조례」 관련)

[의견22-0319] 경상남도 의령군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기 개정된 조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해당 조례 시행 전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 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등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축하는 데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령군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본문에 따라 「의령군 계획 조례」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에도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로로부터 일정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개발행위허가에 이격거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미 공포·시행(2022. 1. 26.) 중인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517호 「의령군 계획 조례」(이하 “의령군조례”라고 한다)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2022년 1월 26일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령군조례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칙의 개정 사항 없이 부칙 그 자체로서 제·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예외적으로 종전 부칙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제도의 시행을 원래 부칙에서 예정했던 것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본칙의 개정 없이

부칙만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9. 4. 11. 회신 의견 19-0110).

또한,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가 아닌 한 그 개정 시 종전 법령 부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종전 법령의 부칙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자치법규의 입법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의령군조례의 부칙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효되지 아니한 의령군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의령군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비교 형량(법제처 2018. 12. 6. 회신 의견 18-0254)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협회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용료와 중복에 해당하는지(「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등 관련)

[의견22-0321] 경상남도 밀양시

## ■ 질의요지 및 의견

### ○ 질의요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연회비)를 납부한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협회가 파크골프장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례 별표 1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용료와 중복에 해당 하는지?

###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밀양시조례” 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는 “전용(專用)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여, “이용료”란 별표 2, 별표 3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밀양시조례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사용하는 날부터 3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제2항), 전용사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제4항) 규정하고 있고, 전용의 사전적 의미가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쓰이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쓸을 의미하는바, 같은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전용(專用)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한 배타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밀양시조례 제3조제5항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같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 2의 체육시설 이용(연습)료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한 배타적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반적 이용에 대한 대가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용사용은 배타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하지 않는 이용과 차이가 있고, 밀양시장이 체육시설에 대해 전용사용을 허가하게 되면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이용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소속된 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라도 배타적 사용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한 배타적인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이용료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3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예술계층보다 넓은 범위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관련]

[의견22-0324] 전라남도 영광군

####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보다 넓은 범위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제2호),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제5호라목)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취약예술계층에 대해서는 전국에 걸쳐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이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예술계층보다 넓은 범위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의견제시 대상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략)

###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략)